

교육부령

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교육부 (교원양성연수과)
연 월 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 이유

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사항에서 “강의 운영방법”은 제거하고 “교과목”을 “연수주제”로 문구를 조정하며, 국립특수교육원이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“세부적인 교과목, 세부 교과목별 이수시간 및 강의 운영방법”에서 “강의 운영방법”은 삭제하고, “연수주제, 연수주제별 이수시간”으로 단순 문구조정(안 제7조제1항)

나. 국립특수교육원이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7조제3항)

「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에 따라 중앙교육연수원과 마찬가지로 국립특수교육원 역시 교육부 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교원 연수를 관장하고 있으므로, 중앙교육연수원과 동일하게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원격교육 연수과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세부적인 교과목, 세부 교과목별 이수시간 및 강의 운영 방법”을 “연수주제, 연수주제별 이수시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영 제2조제7항”을 “영 제2조제8항”으로, “중앙교육연수원과”를 “중앙교육연수원, 국립특수교육원 및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연수과정 등) ① 자격연수 의 연수과정은 별표 2와 같고, <u>세부적인 교과목, 세부 교과목</u> <u>별 이수시간 및 강의 운영방법</u>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.	제7조(연수과정 등) ① ----- ----- -- <u>연수주제, 연수주제별 이수</u> <u>시간</u>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연수 과정을 운영하려는 연수기관은 원격교육연수 계획서 및 원격교 육연수 내용을 원격교육연수 지 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야 한다. 다만, <u>영 제2조제7항</u> 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는 <u>중앙교육</u> <u>연수원</u> 과 교육감이 설치하는 원 격교육연수원의 경우에는 원격 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 지 아니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